즉시접수	당일접수	기 (10년 11년 11년 11년 11년 11년 11년 11년 11년 11년
		oc.or.kr
제출자		www.klc
총	건	(2.00 MM 7.020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

접	수	년	월	일	처 리 인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	
		제		호				
	부동산의 표시							

등기	원인과 그연월일	년 월	일	매매예약	
등	기 의 목 적	소유권이전청	구권기	가등기	
가등	등기할 지분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 재 지)	지 분 (개인별)
등기 의무 자					
등 기 권 리 자					



등 록 면 허 서	1	금				원
지 방 교 육 서	1	금				원
농 어 촌 특 별 서	1	그				원
세 액 합 7	4)	그				원
		그	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 효	료	납부번호	. :			
		일괄납부	· :	건		원
	등	기의무자의	등기필정	정보		
부동산 고유번호						
성명(명칭)		일련	번호		비밀번	호
	첨	부	서	면		
• 매매예약서		통	• 인감증	명서니	ㅏ 본인서명사실:	확인서 또는
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	통	전자본	인서대	명확인서 발급증	등 통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	인서	통	• 등기필	증		통
• 위임장		통	〈기 타〉			
· 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	-)	통				
		년	월	ō.]	
위 신청인				<u>(1)</u>	(전화:)
				<u>(1)</u>	(전화:)
(또는)위 대리인					(전화:)
지병	방법	원			귀중	
	- н	_			, -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

-1	人	년	<u>월</u>	일	-1 -	ا م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宁	제		ই	처 근] 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300㎡

이 상

2 5	등기원인과 그연월일	2017년 5월	25일	매매예약	
3 =	등기의 목적	소유권이전청-	구권가등	통기 -	_
4) 7	나 등기할 지 분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 재 지)	지 분 (개인별)
⑤ 등 기 의 무 자	이 대 백	700101-1234567		별시 서초구 서초 길 20(서초동)	
⑥ 등 기 권 리 자	김 갑 돌	801231-1234567	서울특 96(다동	별시 중구 다동길 통)	



① 등 록 면 해 세 급				- [abs	
① 농 이 촌 특 별 세 급 240,000원 급 15,000원 급 15,000원 급 15,000원 답부번호: 12-12-12345678-0 일괄납부: 건 원 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획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-2006-002095 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·증병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5위임장 등 기괄증 통 (기 타)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⑦ 등 록 면 허 세		<u> </u>	200,000 원	
⑧ 세 액 합 계 금 240,000원 명 등기신청수수료 금 15,000원 납부번호: 12-12-12345678-0 일괄납부: 전 원 의괄납부: 전 원 원 부동산고유번호 1102-2006-002095 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우민등록표초본 1통 (기 타) 보이등록표초본 1통 26일 ② 위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基 ② (전화: 010-5678-1234)	⑦ 지 방 교 육 세	7	-	40,000 원	
금 15,000원 항 등기신청수수료 급부번호: 12-12-12345678-0 일괄납부: 건 원 (D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-2006-002095 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간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기필증 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· 등기필증 통 · 유민등록표초본 1통 · 등기필증 (기 타)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6일 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2日 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2日 ② (전화: 010-5678-1234)	⑦ 농 어 촌 특 별 세	7	-	원	
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: 12-12-12345678-0 일괄납부: 건 원 ●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-2006-002095 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지원하여수로 영수필확인서 1통 · 등지필증 통 · 유민등록표초본 1통 · 등지필증 (기타) • 주민등록표초본 1통 · 등지필증 (기타) ② 위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등 (진화: 010-5678-1234)	8 세 액 합 계		<u>'-</u>	240,000 원	
일괄납부 : 건 원 원 명시 명시 명시 명시 명시 명시 명		7	-	15,000원	
#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	⑨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	: 12-12-12	345678-0	
부동산고유번호 1102-2006-002095 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· 등기필증 통 · 위임장 등 〈기 타〉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017년 5월 26일 ②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	일괄납부	: ?	원	
성명(명칭) 일련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		⑩ 등기의무자의	등기필정보	-	
이대백 A77C-LO71-35J5 40-4636 ① 참 부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· 등기필증 통 · 위임장 통 〈기 타〉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017년 5월 26일 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부동산고유번호		1102-200	6-002095	
① 참 부 서 면 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- 등기필증 통 · 위임장 통 〈기 타〉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017년 5월 26일 ②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성명(명칭)	일런번	번호 비밀번호		
· 매매예약서 1통 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필증 통 삭1행 · 위임장 통 기타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조업 26일 ②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 기업	이대백	40-4636			
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· 등기필증 통 〈기 타〉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조이17년 5월 26일 ② 위 신청인 이 대 및 ② (전화: 010-1234-5678) 및 ② (전화: 010-5678-1234)		① 첨 부	서 면		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→ 등기필증 통 삭1행 · 유민등록표초본 1통 기타 보	• 매매예약서	1 통 ·	인감증명서니	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	
· 위임장 통 〈기 타〉 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017년 5월 26일 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1 통	전자본인서명	병확인서 발급증 1 통	
· 주민등록표초본 1통 2017년 5월 26일 ③ 위신청인 이 대 백 ⓒ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ⓒ (전화: 010-5678-1234)	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	<u>1</u> 서 1 통 →	등기필증	<u>토</u>	삭1행
2017년 5월 26일 ③ 위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• 위임장	통	〈기 타〉		
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• 주민등록표초본	1통			
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				
③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 김 갑 돌 ② (전화: 010-5678-1234)			۵) <u>مح</u> داً		
김 갑 돌 ① (전화: 010-5678-1234)		2017년 5	월 26일		
김 갑 돌 ① (전화 : 010-5678-1234)	 (3) 위 신청인 (이 대	백 ① (·	전화 : 010-1234-5678)	
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	7			전화 : 010-5678-1234)	
I I	(또는)위 대리인			(전화:)	
				•	

삭1행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등기국 귀중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중앙 지방법원



등기신청안내서 -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

■ 가등기란

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,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 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, 이 신청에서는 가등 기권자를 등기권리자,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가등기권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 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과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의 가등 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,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 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가등기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부동산이 토지(임야)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을, 건물인 경우에 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건물의 종류, 구조, 면적,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, 부속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,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.

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매매예약", "매매" 등으로, 연월일은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의 목적란

"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"라고 기재합니다.

④ 가등기할 지분란

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할 경우 기재합니다.

(예) "○번 ○○○지분 전부", "○번 ○○○지분 ○분의 ○ 중 일부(○분의 ○)"

⑤ 등기의무자란

부동산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 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기재합니다.

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(또 는 경정)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가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⑥ 등기권리자란

가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(7)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란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, 지방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⑨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

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

- ②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 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①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12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매매예약서(매매계약서)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

③ 등기필증

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. 단,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 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 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
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③ 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)

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둥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 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기 타>

-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 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・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제3자의 허가, 동의,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,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(시장, 군수, 구청장 발급)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, 주민등록표초(등)본, 매매예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